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 · 회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회계 · 계약 운영 관련

- 회계제도팀 제공 -

1. 시공실적 평가 방법 질의

【질 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시설공사 적격심사 실적심사시 심사자료는 건축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36호) 〈별지 1〉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 대장)제출”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물관리대장으로만 평가할 경우 건축공사로 시공한 공작물(주차장 시설)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공작물 관리대장으로 관리할 경우, 기준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으로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36호) 〈별지 1〉의 규정에 의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우 최근 10년간 실적은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동일한 종류의 실적 인정 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범위)을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건축공사라도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용도 입찰공고의 실적인정범위,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실적내용이 동일한 종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2. 3년간 업종별 시공실적 평가 방법 질의

【질 의】

공동이행방식의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평가대상 업종이 2개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업종별 시공실적 평가방법은?

회 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36호) 〈별지 1〉 II.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의 제5호에서 “당해 발주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공사 평가기준금액 대비 평가대상업종별 실적에 평가대상업종별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다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식 예시 : $\{(A사 \text{ 토목} 3년실적 \times \text{시공비율}) + (B사 \text{ 조정} 3년실적 \times \text{시공비율})\} \div \{\text{추정가격} \times 2.0\} \times 15$

3. 입찰공고시 단서규정 적용 여부 질의

【질 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용역을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누어 입찰공고(단서조항으로 1개업체가 1권역과 2권역 모두 낙찰된 경우 1개 권역만 선택)하였으나 1권역만 낙찰되고 나머지 지역은 재공고까지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 1권역에 낙찰된 업체와 잔여 지역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제한경쟁 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개권역이 한꺼번에 낙찰된 경우 1개권역은 포기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문화재관련 용역 관련 질의

【질 의】

○ △△시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문화재 보호(포장)구역으로 되어 있어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시굴 및 발굴조사 용역 선행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추진할 수 있으나

○ 문화재시굴 용역 수행 후 발굴조사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경우 입찰공고에 따른 기본적인(10일이상)시일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문화재시굴업체가 발굴조사용역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제시한 문화재 발굴용역 계약방법 개선안은 “문화재 시굴업체(기관)가 발굴까지 수행하여 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나 문화재 발굴의 경우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받도록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에 문의한 결과 시굴업체에 한하여 발굴조사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 따라서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 보호법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재청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5. 지역업체 적용 관련 질의

【질 의】

지역제한으로 입찰공고(2004. 11. 23)한 생태계복원정비 공사에 있어서 1순위로 가격낙찰

이 된 업체의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이후(2004. 11. 25)에 이전(移轉) 등록한 경우 지역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행자부령 제66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 이 경우 개인지역사업자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6.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질의

【질 의】

○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 △△특별지원금을 재원으로 「농수산물 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비롯하여 5개 공종(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 폐기물용역)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이후 기존 건축물 철거와 향후 새로운 건물 건립에 대하여 상인들과 의견이 상충되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거친 현재까지 실질적인 도급공사의 착공이 이루어 지지 않아 기성부분없이 회계연도 폐쇄기('05. 2. 28, 준공기한도 동일함)가 경과되면 예산이 불용되기에 이르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 중입니다.

○ 이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규정에 따라 전 공종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코자 하는 바,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계약상대자(건축분야)의 사정으로 인해 기성부분없이 2004. 12월중에 공사 포기서를 제출했을 경우 발주청에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지 여부와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재여부는?

질의 2) 나머지 부대공사 입찰(전기, 소방, 폐기물) 및 수의계약(통신) 건도 계약상대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연도 폐쇄기까지 가지 않고 2004. 12월 중에 발주청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질의 3) 계약해지가 되면 계약당시 제출한 계약보증금(보증서) 및 계약업체의 보증서 받

금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처리 관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신

답변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 2)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계약의 해제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하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1회계연도 단위로 시공실적 신고가 누락된 경우 처리 관련 질의

【질 의】

가격입찰 1순위로 선정된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가 1회계연도 단위로 관련협회에 당해 시공실적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신고에 누락된 실적을 인정하여 적격심사 시공경험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행정자치부 예규 제136호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최근 3년간 업종별 누계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며

○ 이 경우 업체가 관련협회에 평가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내용에 대한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신규업체의 시공실적 관련 질의

【질 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추정가격 140백만원)의 입찰공고에 가격입찰 결과 1순위로 선정된 신규업체가 시공실적이 없어 적격심사 부적격 처리되어 이에 대하여 질의

회 신

○ 행정자치부 예규 제136호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는 추정가격 3억원 이하의 경쟁입찰공사에 대하여는 업체의 수행능력 평가시 시공실적 평가를 하지 않고 경영상태만을 평가하여 신규업체도 시공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입찰에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소액(추정가격 2억원) 공사의 경우, 낙찰된 업체가 공사이윤이 적다는 사유로 공사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한 당해 지역업체에게 불법 하도급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성을 평가항목을 추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9. 신규업체의 시공실적 관련 질의

【질 의】

○ 공사입찰결과 낙찰자(적격심사 중) 결정이전에 법인 대표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경우 입찰의 유효·무효 여부.

가. 입찰공고일 : 2004. 11. 23

나. 등록마감일 : 2004. 12. 22

라. 입찰일시 : 2004. 12. 21

마. 변경등기일 : 2004. 12. 22(신임대표자 취임12. 21)

회 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입찰자는 무효로 하는 입찰로 규정하고 있는바,

○ 귀 질의와 같이 입찰이 끝난 이후에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0. 계약과 다른 상표의 물품으로 납품한 경우 계약위반여부 질의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구매 입찰공고시 약품추천협의회에서 결정한 특정상표의 물품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낙찰자와 상기품명을 명기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으나 물품납품시 계약상대자는 동종의 다른 상표 물품을 납품한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하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납품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조건, 지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보다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모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11. 영업정지처분 정지 처분시 계약의 진행여부 질의

【질 의】

시설공사 입찰에 낙찰된 업체가 건설공사 실적미달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아 계약상대자에서 배제하였으나, 해당 업체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제기와 행정처분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정처분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을 경우 계약을 계속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영업정지 중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효력정지를 받은 날부터 당해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효력정지 이후 부터는 계약절차 이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12.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 시공실적인정여부 질의

【질 의】

적격심사 중 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평가)시 시공실적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할 경우 연차별 준공실적으로 발주처에서 차수별로 건물을 인수하여 사용중인 경우 차수별 준공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36호)제2조제3항제3호 및 <별표 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II-3호의 규정에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하며, 최근 3년간 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간의 기간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 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금 금액은 제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참가하여 낙찰결정 통보를 받아 계약전 계약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입찰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자연석 공사부분에서 단가산출 근거가 잘못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음.

○ 당초 내역서상의 도급공사비는 356백만원이고 내역서상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도급공사비에 대비한 결과 도급공사비의 21.7%에 해당하는 110백만원이 누락되었고, 도급공사비의 21.7%에 해당하는 110백만원을 인상한 금액 466백만원을 변경하여 반영되어야 하는 바,

- 단가산출근거 오류로 인한 미반영된 금액을 정상대로 회복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존 도급내역서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정상대로 반영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물가변동, 설계변동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지 단가산출근거가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14.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기성금 관련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 중에 있는 시설공사에 있어 과도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포기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기성금 청구권 포기가 가능한지
- 반드시 연대보증인에게 공사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없어도 기성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 본 계약에 대한 채권압류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압류채권의 효력이 소멸되는데, 기성금 청구권이 연대보증인에게 승계된다면 본 기성금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도 동시에 승계가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공사를 수행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상대자의 시공부분에 대하여 채무가 발생하고, 계약상대자는 시공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기성대가)을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압류, 전부명령 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를 대상으로 채권(기성대가)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기성금 청구권은 압류한 자의 권리로 이양됩니다. 이 경우 발주처는 민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기 전에 기성부분에 대하여 타절준공을 하여 기성부분과 잔여시공할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타절준공 후 기성대가를 지급하기전 하자보증금등을 기성대가에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잔여기성금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면 이후 시공분에 대하여는 보증시공사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서는 압류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민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 소멸되며, 보증시공사와 채권채무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15. 공동도급 관련 질의

【질 의】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입찰에서 1순위로 선정된 공동수급체(3개사)가 적격심사 후 적합 판정을 받아 발주처로부터 계약체결 요청 공문을 받았으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고 있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잔존구성원 만으로 출자지분변경 후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동 공동수급체를 탈퇴,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비율 변경 등 공동수급협정서를 보완하게 하여 당해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한 바, 잔존구성원의 면허, 시공능력 등 구체적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발주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6. 지역업체 범위 관련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공동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67호)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 되어야하며,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당해 지역업체의 범위는 공사현장 소재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기관 소재지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 제3항과 지방자치단체공동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67호)에 근거를 두고 있는바, 이 경우 지역사업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공법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정비사업에 있어서 현장의 지하매설물(특정폐기물) 때문에 당초 설계된 공법(WATER JET공법)으로 시공할 수 없어 감리단의 요청에 따라 특수장비(WING BIT 천공장비)를 투입하여 작업 중 있으며 동 사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감리단에서는 작업방법의 변경이라는 주장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 이 경우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설계변경이 된다면 대가적용 시 신규대가로 적용해야하는지 기존내역항목 낙찰율로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시공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 변경이 가능한 바,

○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상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해야하며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8.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계약금액조정 관련 질의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확포장공사를 장기계속공사(5차계약)로 시행함에 있어서 2차공사계약분과 4차공사계약분을 앞당겨 수행하여 총공사기간(절대공기 1,800일)중 중복공사기간(337일)이 발생하였음. 이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2004. 9. 1)시 중복공사기간 제외 없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중복공사기간 인정·불인정 여부 질의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이며,

○ 참고로, 계약상대자가 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을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산출해야 하는바

○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9. 건설업체간 합병에 따른 신인도 점수 관련 질의

【질 의】

건설업체의 합병시 신인도 점수가 아래와 같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합병 후 평가점수 산정방식을 질의

구 분	합병전 신인도 점수	
	협력관계 평가	재 해 율
○ ○ 건설(주)	70점 이상(1.4점)	0.7배 이하(1점)
○ ○ 산업(주)	90점 이상(3.0점)	0.4배 이하(2점)

회 신

합병한 업체의 신인도 평가는 합병대상업체 각각의 신인도를 합병한 업체가 승계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동일 항목 내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주2 및 주5에 의거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전기공사업 관련 질의

【질 의】

-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소기업대표로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의
 - 소방전기2종 공사 발주 시 2년전에는 전기업자가 낙찰 후 소방면허와 연계해 계약이 가능하였으나 불법 하도급이라 규정하여 현재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면허를 가진 자와 공동도급을 한 사항이 불법이 되는지 입찰전에 공동도급은 불법이 아니고 입찰 후 공동도급은 불법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안으로 분리발주를 시키던지 낙찰 후 공동도급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재정법 제63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은 지방재정법 및 다른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은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에서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 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공사와 다른 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1. 건설업체간 합병에 따른 신인도 점수 관련 질의

【질 의】

○ 사업 준공금에 대하여 채권압류가 되어 있어 준공금을 처리코자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 사업내역

- 사 업 명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관련사업(용역)
- 준공일시 : 2004. 11. 25
- 준 공 금 : 150,000,000원
- 채 권 자 “갑” : 갑주식회사
- 채권자 “을” : 개인
- 채 무 자 : “공동”주식회사
- 제3채무자 : 지방자치단체

○ 채권압류 내용

- “갑” 채권자 (갑 주식회사) : 2004. 12. 15자 준공금에 대하여 “전부명령” 채권압류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지 못함 - 진행 중)
- “을” 채권자 (개인) : 채무자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내용으로 준공금에 대하여 2005. 1. 10 자 “가압류”

질문 1) “갑”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확정증명원과 함께 압류금을 청구하면 “을”채권자가 “임금 채불”문제로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을 받은 “갑”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

질문 2) “갑”채권자가 전부명령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임금문제”로 가압류를 하였기 채권자들의 분쟁 소지의 예상으로 제3채무자는 공탁이 가능한지요?

질문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노무비”는 압류제외대상으로 되어있어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노무비”를 채무자(사업시공자)가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는 지 아니면 채권자에게 지급해도 무방하는지요(공탁포함)?

질문 4) “노임”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규정 되어 있는데 본 건은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은 용역사업(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관련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 “노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회신

- 질문 1, 2에 대하여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248조에 공탁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가 상기 법령의 규정에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3에 대하여
 - 법원의 압류 등의 명령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금지대상인 노무비까지 포함한 금액인지를 확인하여 만약 노무비까지 포함되었다면 법원에 정정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4에 대하여
 - 관련명령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법원의 명령이 우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